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8년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의거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삭제
(안 제5조제1항제2호)
-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 기준 완화
(안 제28조제3항제3호)
-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완화
(안 제40조제1항제4호)
- 사용·대부료 인상에 대한 감액 조정을 확대 (안 제34조)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 (2008.9 행정안전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5조제1항제2호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중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토록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안 제28조제3항제3호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 으로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감액율을 일원화된 대부요율의 적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대부료 감액 조정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일원화하였음
- 안 제40조제1항제4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수의매각 범위를 완화하였음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감안)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